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1 (수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4일

(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문근)

가. 제안이유

-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(규제완화)하여 상위법령과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동물 등록 제외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요건 사항 개정(안 제 5조)기금의 존속기 한을 2020년까지 연장함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: 신선기)

- '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-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239호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동물등록 제외 지역)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으로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충청북도 홈페이지"를 "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"호선"을 "호선(互選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연임할"을 "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2회"를 "두 차례"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기관·단체로 한다. 다만,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 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외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

- •의결에서 제척된다.
-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 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- 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(또는 민법상 친족(4촌)등)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- 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제5조의3(위촉 해제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,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 - 2.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 - 3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4.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제8조제2항 중 "이를 지체 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

"상당하는"을 "상당한"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"소요된"을 "들은"으로, "산정"을 "산정(算定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따른 소요경비"를 "들은 경비"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"입양"을 "입양(入養)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혅 했 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(생 략)

② 제1항 각 호에 등록을 신청 한 동물에 대하여는 「동물보 호법 시행규칙 | (이하 "시행 규칙"이라 한다) 제8조제2항 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.

③ ~ ④ (생 략)

제4조(동물등록 제외지역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도지사가 해당 제외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.

1. 오지(奧地), 벽지(僻地) 2. 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 의 시장·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개 정 안

(현행과 같음)

----- 대해서는 -----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동물등록 제외 지역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단서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동물등 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는 자가 없는 읍 면으로서 도 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 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.

개 정 안

제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·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 1. 「수의사법」 제17조에 따라

 개설된 동물병원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
 3.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

 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

 센터

 4.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

 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

 터

③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<u>충청북도 홈페이지</u>에 10 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이나 기관·단체로 한다. 다 만, 시설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 대상은 제 외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혅 했 개 정 안 1.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2. 위원은 공무원 및 관련 전 1. (현행과 같음) 문가(수의사, 공중보건 전문 가,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) 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----- 호선(互選)----. 며, 연임할 수 있다. 3. --------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4. (생략) 할 ----. ⑤ ~ ⑥ (생 략) 4. (현행과 같음) ⑦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⑤ ~ ⑥ (현행과 같음)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 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두 차례 -----<신 설> 제5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 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 결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

·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

현 행	개 정 안
	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
	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	<u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</u>
	족 관계(또는 민법상 친족
	(4촌)등)에 있는 자가 심의대
	<u>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</u>
	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
	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
	<u>인정되는 경우</u>
	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
	에게 공정한 심의・의결을
	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
	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
	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
	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
	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
	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	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
	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	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
	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
	제5조의3(위촉 해제) 위원장은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

혅 했 개 정 안 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 으며,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 1.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 하는 경우 2.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 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경우 3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4.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(동물의 반환 및 처분) ① 제8조(동물의 반환 및 처분) ① (생략)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 (현행과 같음) 실 ·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 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확실한

현 행	개 정 안
경우 <u>이를 지체 없이</u> 반환하여	
야 한다.	<u>지체 없이</u>
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	
실·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	3
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	
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	
<u>상당하는</u> 금액을 청구할 수 있	
다.	<u> 상당한</u>
	 .
제9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	
① ~ ② (생 략)	제9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보호에 <u>소요된</u> 비용을 <u>산정</u> 하	3
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한	<u>들은</u> <u>산정</u>
다.	<u>(算定)</u>
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	
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	4
게 귀속된 해당 동물에 <u>대하여</u>	
<u>는</u>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	대해서
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	느
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	
제10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	
보호비용) ① (생 략)	제10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및
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소	보호비용) ①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	②
구하는 보호조치에 <u>따른 소요</u>	
<u>경비</u> 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	<u>들은 경비</u>
같다.	
제11조(수수료) 1. (생 략)	
	제11조(수수료) 1. (현행과 같
2. 유기동물을 <u>입양</u> 또는 기증	흥)
받아 등록하는 경우 : 전액	2 입양(入養)

관계법령 발췌

□ 동물보호법

- 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〈개정2013.3.23〉
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 -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 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 -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・절차,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,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3.23〉
- 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13.>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치·운영하는 동물

- 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- ③ 시·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-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⑤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(이하 "보호비용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으며,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⑥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
- 4.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5. 제22조를 위반한 경우
- 6.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7.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- ⑦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3.23.〉

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- 제7조(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)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·도 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2.31>
 - 1. 도서[도서,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]
 - 2.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
- 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"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 -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
 - 2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
 - 3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
 - 4.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 - 5. 사업계획서
 -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 고,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 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1호

○ 사 유

-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금회 개정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

---- < 의인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> --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국회의원·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 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
- 3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작성자

농정국 축산과장 신유호